

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3. 23.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바 『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』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

2. 주요내용

- 고성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고성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(안제7조)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(안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없음
- 다. 규제심사 : 규제신설, 폐지 등 없음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

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을 삭제한다

제3조제1항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“15인”을 “1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2호 중 “통영소방서장”을 “고성소방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 2.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.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·조정 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</p> <hr/> <p>2. <삭제></p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군수 2. 통영소방서장 3. 고성경찰서장 4. 육군8358부대 제2대대장 5. 경상남도고성교육청교육장 6. 한국전력공사고성지점장 7. KT 고성지점장 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(생략) ③(생략) 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1명 15명</p> <hr/> <p>2. 고성소방서장</p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p>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(생략) ③(생략)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</p>